

## 인성교육원 운영 규정

### 제 1 장 총칙

**제1조(소속)** 인성교육원은 (이하 교육원이라 한다)은 루터대학교 산하 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 교육원은 전인적 인성계발 및 자기 주도적 삶의 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장 사업

**제3조(사업)** 본 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인성 행복 농원 운영
2. 인성교육사 교육과정
3. 인성교육지도사 자격과정
4. 인성교육과 관련된 학술행사 개최
5. 기타 본 교육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# 제 3장 조직 및 역할

#### 제4조(조직)

- ① 본 교육원에는 원장, 인성교육 교육부장, 행정지원팀장을 둔다.
- ②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인성교육을 지원을 위해 인성 교육부를 둘 수 있으며 인성교육부장은 원장이 임명한다.

#### 제5조(역할)

- ① 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교육부장은 교육 프로그램개발,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과 강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- ③ 행정지원팀장은 본 교육원의 행정에 관한 총괄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본교 교양학과와 연계하여 교육목표를 실현 할 수 있다.

## 제 4장 재정 및 운영

**제6조** (재정) 본 교육원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, 독립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.

**제7조** (운영세칙) 본 교육원의 강사료 및 인건비에 관하여는 원장이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